

# 롯데푸드 주식회사 이사회 규정

1.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롯데푸드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함) 이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권한
  - 3.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 3.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4.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5. 의장
  - 5.1. 이사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5.2.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5.3. 의장의 유고 시 임시의장은 최선임자 또는 의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종류
  - 6.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6.2.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시작월의 셋째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 6.3. 정기이사의 회일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은 회일의 3일전 까지 변경사유 및 변경회일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4.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7. 소집권자
  - 7.1.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의 유고 시 5.3.항에서 정한 자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 7.2.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8. 소집절차

- 8.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8.2.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8.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9. 결의방법

- 9.1.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 제415조의2③(감사위원의 해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9.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동시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9.3.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9.4. 위의 9.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0.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0.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 (3) 정관의 변경
- (4) 증자 또는 감자의 결정
- (5)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6)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 (7)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9)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1)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 (13) 이사의 보수

- (14) 상법 제542조의9에 규정된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의 특수관계 인과의 거래 승인
- (15) 법정준비금의 감액
-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 10.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 (3)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
- (4)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5)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6)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 (7) 100억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해지의 결정
- (8) 100억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의 결정

#### 10.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신주의 발행
- (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3) 준비금의 자본 전입
- (4)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 (5) 자기주식의 소각
- (6) 상법에 따른 주식분할 또는 병합 결정
- (7) 상법에 따른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 전환 결정
- (8) 주식 관련 사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증권예탁증권, 조건 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
- (9)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의 상장 추진 결정
- (10) 상법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
- (11) 발행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
- (12)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및 시설증설에 관한 결정
- (13)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
- (14)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
- (15)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타법인 주식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
- (16)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단기차입금 증가에 관한 결정
- (17)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
- (18)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 (19)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 또는 증권에 대한 대여에 관한 결정

- (20) 공정거래법상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50억 이상의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용역을 직·간접적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것에 대한 결정
- (2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2) 5억 이상의 기부금 집행에 대한 결정
- (23) 기타 재무관련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 10.4. 이사에 관한 사항

- (1)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 (2)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이용거래의 승인
- (3)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4) 이사의 경업,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경임
- (5)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6)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 (7)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10.5. 기타

- (1)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 (2)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1. 보고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1.1. 상법 제393조 제4항 기재, 이사의 정기보고 사항
- 11.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11.3. 주주의 제안권 행사에 관한 사항
- 11.4.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 11.5.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 11.6. 자율준수관리자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준수여부 점검 결과
- 11.7.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11.8. 임원의 승진(미등기임원 포함), 미등기임원의 선임,해임 및 상당역의 위촉, 해촉 등 인사사항
- 11.9.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12. 이사회 내 위원회

- 12.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2.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12.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12.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12.5.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13. 관계인의 출석

- 13.1.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14. 간사

- 14.1. 이사회는 간사를 둔다.
- 14.2.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14.3. 의장이 간사를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간사는 이사회 제반 업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15. 의사록

- 15.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15.2. 의장은 의사록의 기록을 위해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 15.3.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및 의결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6. 의사록 등·초본의 발급

- 16.1. 주주 등으로부터 의사록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간사는 등·초본에 별도 회사의 인감을 날인한 후 요청인에게 교부한다.
- 16.2. 회사는 16.1.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16.3. 간사는 등·초본의 발급내역을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발급한 등·초본의 사본과 함께 보관한다.
- 16.4. 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간사는 의사록 등·초본 발급대장 등 관련 기록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초본 발급용 인감의 관리

17.1. 이사는 의사록 초본 발급을 위해 이사 개인의 사용인감을 간사에게 제출한다.

17.2. 간사는 이사가 제출한 인감에 대한 인감등록대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인감과 함께 보관한다.

17.3. 본 조에 따라 이사가 간사에게 제출한 인감은 의사록 초본의 발급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